

「2025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 기업체 및 참여자 추가모집공고

전북지역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업종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「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」, 「일자리 채움지원금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(재)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동차업종 기업체, 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7월 22일

(사)캠텍종합기술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 명 :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
- 모집기간 : 2025. 7. 22.(화)~ 선착 순 마감
- 추가모집 인원 : 일자리도약장려금 4명, 일자리채움지원금 2명
- 지원대상 기준
 - (기업 기준) :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자동차 업종 기업 중 (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)
 - ① 현대·기아자동차 협력사
 - ②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2025년 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00인 이하 기업체(우선지원 대상 기업)

■ (근로자 기준)

- ① 지원 대상기업에 신규 입사 근로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유자
- ② 월급여 5백만원 이하 근로자(고정수당, 상여금 등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및 신청서 기준 판단)

※ 입사 후 3개월 내 주소이전 완료 시 지원 가능

세부사업	지원대상	지원요건	비고
일자리 도약장려금	기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025.1.1.이후 만35~58세 이하 신규 채용(예정) 기업·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, 최저임금 100%이상 근로조건	기업체 신청
일자리 채움지원금	신규입사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025.1.1.이후 만35세~58세 이하 신규 입사자·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	

2

사업 내용

가. (일자리 도약장려금) 2025. 1. 1. 이후 만 35~58세 이하 신규채용근로자를 최저임금 100%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

- 모집규모 : 4명(기업체별 최대 2명 지원_기선정인원 포함)
-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540만원 / 월60만원×9개월
- 최소 고용유지기간 3개월 경과 후 1회차 180만원(3개월분) 지원, 이후 1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 후 60만원/월 지원
- 일자리 채움지원금 대상 근로자 중복 지원 가능
- 사업비 내 지원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 선정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될 수 있음

나. (일자리 채움지원금) 2025. 1. 1. 이후 만 35~58세 이하인자로 지원대상 기업체 정규직 신규취업(입사)근로자에 근속지원금 지원

- 모집규모 : 2명(기업체별 최대 3명 지원_기선정인원 포함)
-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(근속 3개월, 6개월, 9개월) / 100만원×3회
 - ※ 사업비 내 지원으로 선정인원에 따라 지원인원 및 지원횟수 단축될 수 있음
 - ※ 3,6,9개월 경과일이 2025년 12월 10일 내 회차까지 지원
- 사업신청일 기준 기 취업(채용완료_고용보험 가입기준)자만 지원 가능
- 최소 고용유지기간 3개월 경과 후 1회차 지원, 이후 6개월, 9개월 경과 후 해당 지원금 지원
 - ※ 3,6,9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서 접수 시 재직근로자에 한하여 지원
-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근로자 중복 지원 가능
- 지원금 신청은 기업체를 통해 지원 가능

3

사업 지원 절차



참여 제외 근로자

-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
-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③ 동일 기업체에서 6개월 이내 퇴사 후 재입사 한 자
- ④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
- ⑤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, 청소, 경비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
- ⑥ 기업체의 해외법인 또는 타지역의 지사 근무자로 채용되거나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
- ⑦ 해당 근로자가 참여기업의 대표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관계가 있는 자
- ⑧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, 휴학생 신청 불가(단, 졸업예정자는 제외)
- ⑨ 직접일자리 등 타사업 중복참여자
- ⑩ 전북특별자치도 외 주소지 거주자(주민등록 기준)

참여 제외 기업

-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(사업주)
 -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(받은) 기업(사업주)
 - ▶ 지역고용촉진지원금,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안정장려금 등
-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기업(사업주)
 - ▶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 지급제한 함
-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
 -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'21.2.10. 고용노동부 공표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-65호) 기업으로 동 사업 참여 제한
 - ▶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>정보공개>사전정보 공표목록>산재예방/산재보상>사업장의 산업재해
- ④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이 확인된 기업
-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
5 유의 사항
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,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- 적격대상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선발 대상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
- 본 사업은 기업 선발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, 기업선정 이후 진행 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운영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
-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간 동안 처음 사업신청 한 기업에 재직하여야 하며,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. 사업기간 내 타지역 거주가 발견된 경우, 해당기간 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
- 선정기업 취소사유 발생 시 후 순위 기업을 선발할 수 있음
- 지원자의 고용유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종료 후 관련 자료의 일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수행기관은 필요 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‘2025년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’ 지침에 따름

6 신청 방법

- 접수기간 : 2025. 7. 22.(화) 선착순 마감
- 접수처 : (사)캠텍종합기술원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 - 이메일 : sjlee2190397@naver.com
 - * 필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야하며, 개인정보 미동의 시 적격심사 불가로 사업 참여 불가
 - * 첨부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
- 문의 : ☎ 063-219-0397
- 각 세부사업의 지원신청은 기업체가 신청하여야 하며, 세부사업별 지원 서류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지원서류 제출 시 중복서류는 1부만 제출

붙임 세부사업별 유의사항 및 참여신청 서류

1.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_일자리 도약장려금
2.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_일자리 채움지원금. 끝.